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7
----------	------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학”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연구인력 부족난을 해소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자금의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제출서류”를 “기업부담금 입금 통장 사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다.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 라. 실무위원회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위원장이 지명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의2제3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10. 6 - 2005. 10. 15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 을 “대학 및 연구기관” 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기관” 이라함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를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하고, “안산테크노파크” 를 “경기테크노파크”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담금 입금통장 사본

제7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위원의 임기는 현재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 실·과		지식산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식산업담당 장경열
	담당자 성명·전화	정진권 (행정 210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정의)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 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의) ----- ----- 대학 및 연구기관 ----- ----- ----- ----- -----
제2조(정의) 1. ~ 3. (생략) 4. <신설>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기관”이라함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2(사업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u>안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u> 에 의하여 설립된 <u>안산테크노파크</u> 에 위탁할 수 있다. ②(생략) 1. ~ 5. (생략)	제4조의2(사업관리의 위탁) ①----- ----- -----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경기테크노파크----- ②(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교부신청) ①(생략) 1. ~ 3. (생략) 4. 기타 제출서류	제5조(교부신청)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부담금 입금통장 사본
제7조(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 ④(생략)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⑥ ~ ⑧(생략)	제7조(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⑧(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②(생략)</p> <p>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p> <p>④~⑤(생략)</p>	<p>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